
입 법 정 보

2018-19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7
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8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
10.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
1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
13.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3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6.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14
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5
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6
19.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6
2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17
21.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7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2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2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행정안전부).....	19
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2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3
2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4
2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5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5
3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6
3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6

33.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7
3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7
35.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7
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3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8
3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8
3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9
4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0
41.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0
42.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1
4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2
44.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2
45.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3
4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청).....	33
4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	33
4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4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50.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6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0. 29. • 마감일자 : 2018. 12. 10.

○ 고압가스운반차량 수량의 감소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을 그 수량 변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연장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며, 고압가스 판매사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하여 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간 일정 거리를 유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아 조치한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감소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개정(안 제4조제5항)
- 나. 사업 폐지를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11조 및 별지 제9호서식)
- 다. 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아 조치하도록 규정 신성(안 별표 9 제1호가목1)라)
- 라.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10.1.27)된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기준 삭제(안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
- 마.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11.5.24)된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용기 관련 된 표시사항 기준 삭제(안 별표 24 제1호가목 8) 및 9))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0. 29. • 마감일자 : 2018. 12. 10.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승강기부품 14종’을 행정안전부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을 행안부로 이관하고, ‘화장비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을 식약처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서 삭제 ([별표 2])

- 1)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조속기, 비상정지 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립처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관 등 승강기부품 및 화장비누’를 삭제

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 및 분리 ([별표 3], [별표 4], [별표 6])

- 1)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서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립처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관 등 승강기부품 및 화장비누’를 삭제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스케이트보드에서 전동보드를 분리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29.
- 마감일자 : 2018. 12. 10.

-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 건설산업 혁신방안 ‘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안 제30조의2)

- 1)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패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50억 미만 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

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안 제34조)

- 1)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이 60%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64%로 확대

다.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안 제35조)

- 1)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축소

라.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업종명칭 변경 (안 별표 1, 별표 2)

- 1)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의 업종명칭이 동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공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으로 변경

마.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 (안 별표 5)

- 1) 현장대리인의 정규직 채용 장려를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29. • 마감일자 : 2018. 12. 10.

-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 건설산업 혁신방안 '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접시공 실적 가산 (안 별표 1 제1호가목, 별표 2 제2호가목)

-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시공 능력평가지 공사실적을 가산

나. 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 (안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보유기술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지 우대다. 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 (안 별표 1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라목)
-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삭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0. 29. ● 마감일자 : 2018. 12. 8.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의 멸실, 훼손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안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2. 저호)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10. 30. ● 마감일자 : 2018. 12. 10.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4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중소기업 요건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0. 30. • 마감일자 : 2018. 12. 10.

- 임신·출산 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영아까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보청기로 인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적정 급여를 유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진료비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 까지 확대(안 8조의2 제1항)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단태아 50만원 → 60만원 /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안 8조의2 제1항)
다. 현행 8조의2 제1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 단서 조항을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 정리(안 8조의2 제2항)
라.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2, 별지 14호 서식, 별지 14호의3 서식)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10. 30. • 마감일자 : 2018. 12. 10.

- 유기기구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어 이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 복수화에 따른 검사수수료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게임물과 유기기구가 혼합된 형태의 VR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법제도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기기구 주요 부품 노후화에 따른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주기적 교체를 의무화(안 제7조제2항 8호, 제11조제2항5호 개정)

-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기존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안 제69조제4항 개정)

다.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 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운영의 경우를 정의(별표1의2 제1호가목 개정)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은 당초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 이내로 정의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30. ● 마감일자 : 2018. 11. 20.

○ 법에서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1] 제2호 다의2목 신설)

나. 용어변경(현행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제98조, 제100조, 제101조의2, 제107조, 제115조, 제117조, 제117조의2, 제119조,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

표 11 개정)

10.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0. 30. ● 마감일자 : 2018. 12. 10.
- 구인신청서 상 구인정보 제공 대상 기관을 현행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서 워크넷 인증 일자리정보 이용기관으로 수정·변경하고, 구인등록 시 신청자의 신분 확인 증명서로서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 사원증도 인정하기 위해 구인신청서 상 서식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업소개사업 신고서·등록신청서 상 기입란에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항목 기입란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행 구인신청서(상용 및 일용) 1쪽 중 “구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대상인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워크넷 인증 일자리정보 이용기관”으로 변경하여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의 구인정보를 일반 일자리정보 제공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수정함.
 - 나. 현행 구인신청서(상용 및 일용) 2쪽 중 “유의사항” 제1호에서 구인신청 시 신청인은 상담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제출도 가능토록 하여 구인신청 절차 상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다.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에 신고 또는 신청 민원인의 팩스번호·이메일주소 기입란이 없는 관계로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이의 기입란을 마련하고자 함.

1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31. ● 마감일자 : 2018. 12. 10.
-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 범죄예방조치 의무화(안 제61조의3 개정)
 - 1)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500세대 미만)에도 범죄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11. 1. ● 마감일자 : 2018. 12. 14.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 기준 위반행위등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이 개정·시행(법률 제15810호, 2018.10.16. 일부개정, 2019. 4.1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등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할 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 나. 신고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10일 이내 팩스, 전화(문자전송을 포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함
 - 다. 시행규칙 [별표 1] 「시물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이 「시물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13.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1. 1. ● 마감일자 : 2018. 12. 11.
-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되었는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인 수는 2명 이내로 함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의2)

-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갈등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함

라. 규제 신속확인(안 제11조의2)

- 규제 신속확인의 절차 및 신청서식 등을 정함

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안 제11조의3)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 및 신청서식, 기간연장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바. 임시허가(안 제11조의5)

- 임시허가 절차 및 신청양식, 기간연장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사. 손해배상 방안(안 제11조의3 , 제11조의5, 제20조, 제20조의2)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손해유형에 따라 정하고, 사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손해배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함.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적정한 금액을 공탁 또는 제3자에게 준비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권한의 위탁 및 지원기관(안 제36조의2, 제38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접수 등 일부 권한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고, 산업융합지원센터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1. 1. ● 마감일자 : 2018. 12. 14.

- 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안 별표 4 및 별표 6)

-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

나.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0)

-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를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살수장치 또는 방화벽 설치 시 완화)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거리를 유지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1. ● 마감일자 : 2018. 12. 11.
- 물류단지 내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면적 기준을 정하는 주체에 대해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과 「물류단지 개발지침」 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의계약 토지공급 면적기준 결정 주체 조정(별표 4)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면적 기준을 물류단지 개발지침 내용과 동일하게 1필지 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도록 변경

16.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1. ● 마감일자 : 2018. 12. 11.
- 공간정보사업자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간정보기술자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공간 정보 공제조합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공제 사업 감독기준」에 규정된 경영개선 조치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법률상 마련하였으며, 협회의 지도감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안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

- 공간정보사업자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

나.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제 합리화 (제22조의3제5항 및 제6항)

-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서의 흠결이 없는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할 때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의 경영개선 조치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24조)

- 공간정보 공제조합 계약자 보호차원의 경영개선 조치 등의 사항에 대한 의무를 하위고시에서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라. 협회의 지도·감독 규정 신설 (안 제24조의2)

- 협회의 지도·감독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협회의 지도·감독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마. 권한의 위임대상 명확화 (안 제27조)

- 권한의 위임 대상에 현행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1. 1. • 마감일자 : 2018. 12. 11.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과 관련,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담은 명부를 제출받지 못해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

* ‘18.8월 일본 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 오류 발표

또한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 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한 철저한 검증 필요, 이에 사업주 의무고용 현황 검증 업무와 마찬가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검증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민감정보의 처리 권한도 부여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업무 위탁(영 제82조, 제82조의2)

- 고용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1. 1. • 마감일자 : 2017. 12. 11.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과 관련,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담은 명부를 제출받지 못해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한 철저한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 명부의 제출 의무화(규칙 제9조)

- 국가기관의 장 등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할 때 사업주와 동일하게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19.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1. 2. • 마감일자 : 2018. 12. 14.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 또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서식은 있으나, 후견인 지정 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 내역 통보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후견인 지정 신청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 및 별지 서식을 정하는 내용 규정(안 제3조의제2항 신설)
- 나.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제3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함

2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11. 2. • 마감일자 : 2018. 12. 12.

-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 사업연도 후 그 해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사항에 대해 시행령 보다는 법에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 마련

21.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1. 5. • 마감일자 : 2018. 12. 17.

-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능을 보유한 자가 제조·가공·조리하는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하는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을 받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조사서에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식품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및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별표 1 개정)

- 1)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과 해당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1. 5. ● 마감일자 : 2018. 12. 17.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에 따라 개정 및 신설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신속확인, 일괄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의 신청 등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39조)
- 다. 일괄처리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9조의2)
- 라.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구체화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0조 및 제41조)
- 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42조부터 제42조의3)
-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방법, 유효기간,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

2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1. 5. ● 마감일자 : 2018. 12. 17.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신청서식 등 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및 신설(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개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신설)

2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1. 6. ● 마감일자 : 2018. 12. 17.
- 지방자치법 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제정과 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에서 조례의 제정과 폐지 청구 제도와 관련한 내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법률에 규정 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 등을 분리하여 별도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제1조)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 나. 주민조례발안권 규정(제2조)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

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주민조례발안권의 보장(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라. 청구제외대상(제4조)

- 법령 위반, 지방세 등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관련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마. 청구요건(제5조)

- 주민이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여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하,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하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함

바.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제6조)

-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청구조례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서명 요청 등(제7조~제8조)

- 대표자 등은 대표자 증명서가 공표된 지 6개월(시·군·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에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음

아.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제9조~제11조)

- 1) 청구권자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적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 대표자가 작성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를 10일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하도록 함
- 2) 열람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을 무효로 결정하여 청구인명부를 수정하도록 함

자. 청구의 수리 및 심사(제12조~제13조)

- 1)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청구를 수리하면,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2) 이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

차.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규정(제14조~제16조)

- 1) 청구서 등의 서식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업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2)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서명자 확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6. • 마감일자 : 2018. 12. 17.

○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제23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별표 1, 별표 2, 별표4, 별지 2, 별지 8, 별지 17, 별지 17호의2 서식)

- 건설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법에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

2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11. 6.
- 마감일자 : 2018. 12. 17.

○ 주요내용

- 가. 법 제10조제2항의 세부기준이 [별표 5]제2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법 제10조 ‘제2항’을 추가함.
- 나. [별표 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에 현행 업무체계를 반영하여 비행안전구역의 관리책임자를 관할부대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의 세부항목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하는 경우’의 세부항목을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다. [별표 5] 제3호 ‘사’항을 신설하여 관할부대에서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역별 표면높이에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 법 제13조제1항에서 협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협의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협의 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일부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동의여부에 대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마.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에서 ‘신고대상’을 삭제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추진을 용이하도록 개정함. 단, 군 협의 대상을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용도변경에 따른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 법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의 협의대상 “주택” 용어가 “건축물”로 개정(‘14.12.30)되어 보호구역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할 때 협의대상이 변경되

었으나, 법 개정 후 협의업무 위탁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는 위탁의 범위는 변경되어 있지 않아 법 제13조1항 협의의 대상과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상충되어 개정함.

사. 시행령 [별표 4]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마’를 정정함.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11. 6.
- 마감일자 : 2018. 12. 17.

○ 주요내용

- 가. 2017년 12월 26일부 「공항시설법」과 2018년 2월 9일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나. 법 제13조제1항에서 협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협의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협의 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일부 규정을 시행령에 규정함.
- 다.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은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향후 동일한 내용의 협의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유효기간을 정하여 미리 일괄하여 동의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협의요청을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가 아닌, 동일한 내용의 협의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규율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선제적인 동의 여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 여부결정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크고,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함.
- 라.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기존 주택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마을

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계수리소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경감하도록 함.

마.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이 시행령 제13조 1항제1호에서 규정됨에 따라 개정

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 중 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는 기존도로와 동등한 규모로 신설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동의하도록 함.

사.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기존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증축 재축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하여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함임.

2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11. 7. • 마감일자 : 2018. 11. 27.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평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 유통 또는 판매가능한 곤충에 대한 규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고, 곤충생산업 변경신고 예외사유로 ‘곤충의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곤충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정력 절감

○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신설(제3조제5항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

나.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안 제6조제3항제2호)

- 유통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규격을 고시하도록 함
- 다. 식용 외 곤충의 사육기준 신설 (안 별표 3)
 - 식용곤충 외에도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 추가를 위해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을 ‘곤충의 사육기준’으로 변경

2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7. • 마감일자 : 2018. 12. 17.
-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표기를 위한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내용을 건축물대장 서식에 반영하고,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기준을 「건축법」규정에 맞게 일부 완화하며, 건축물대장을 발급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에 관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별지서식 및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1. 8. • 마감일자 : 2018. 11. 20.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공포('18.6.12)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조정·심의 기능 강화, 로봇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및 로봇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 권고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제3조)
 - 나. 로봇산업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등(안 제4조, 제5조)
 - 1)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

다.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조)

- 1) 로봇윤리자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

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권고(안 제10조)

- 1) 로봇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을 규정

마. 지능형로봇윤리현장의 내용 등(안 제11조)

3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1. 8. • 마감일자 : 2019. 1. 7.
- 일부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을 지정하고,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중 에너지저장장치의 단위를 제품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신규 지정 ([별표 2], [별표 6])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 추가
 - 나. 전기용품 에너지저장장치 정격용량 단위 변경 ([별표 4])
 - 에너지저장장치 정격용량 단위를 저장량 단위(kVAh)에서 출력단위(kW)로 변경

3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1. 8. • 마감일자 : 2018. 11. 28.
-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도시가스 품질검사 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결과 처리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신설)0

나.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고 검사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을 설정 (안 별표 10)

33.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1. 8. ● 마감일자 : 2018. 12. 18.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자립수당 지원 및 주거, 취업, 교육 등의 통합적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서비스, 사례관리 내역 등 열람 권한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3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11. 8. ● 마감일자 : 2018. 12. 18.

- 곤충생산업 변경신고 예외사유로 ‘곤충의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곤충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정력 절감

○ 주요내용

가. 변경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에 ‘곤충의 종류’ 추가 (안 제6조제4항제3호 신설)

- 변경신고 제외사유에 ‘곤충의 종류’ 추가 함

35.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8. ● 마감일자 : 2018. 12. 18.

- 다부처 협력사업을 위한 他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R&D 사업관리 위탁 협약방식 개선하여 행정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1. 8. ● 마감일자 : 2018. 12. 18.
- 첨단기술기업의 활성화 및 기업 집적공간 조성 확대를 통한 특구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완화(안 제12조의3)
 - 나.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에 지식산업센터 허용(안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7의3)
 - 다. 과태료 부과시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9)

3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19.
-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주민이 전자 서명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민소환 청구요건 차등화
 - 나.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 다. 개표요건 폐지 및 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3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19.
-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민투표 허용대상 조례위임 삭제
- 나. 주민투표 제외대상 명확화
- 다.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 라.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 마. 개표요건 폐지 및 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3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19.

- 1인 세대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국적자가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신고 시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방법 개선 (안 제23조의2 신설)
 -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를 제시하는 경우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 임대인, 현재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을 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신청자에게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통보
- 나.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리 개선 (안 제26조의4 개정)
 -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입국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제출 근거 마련
- 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 (안 제36조제3항 개정)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으로 규

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 으로 규정

4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19.
-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몰래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 세대주 등에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절차 마련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나 임대인, 현세대주가 신청하면 신규전입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의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을 위한 신청, 변경신청서 보완 등 서식 정비

41.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19.
-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시 관세청의 유사민원과 일괄신청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통수증서·국제통수확인서의 변경 발급시 구비서류를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하는 한편, 선박 말소등록시 민원인이 구비해야 될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 절차 개선(안 제2조)
 - 1)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법 시행규칙

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와 함께 외국 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에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상태임

- 2) 이에, 해양수산부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서와 관세청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신청)서’의 양식을 일치시키고, 일괄적으로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국제통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구비서류 정비(안 제19조)

- 1) 국제통수증서·국제통수확인서의 변경발급 신청시 민원인이 선박국적증서 사본(구비서류)을 제출하는 대신 지방청이 동 증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 구비서류 명확화(안 제23조)

- 1) 현행 규정은 선박 말소 등록 신청시 말소사유에 상관없이 지방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 처리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 이에, 선박을 해외에 매각하는 등 수출로 인하여 선박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신고필증 또는 그 말소 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지방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토록 함

42.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19.

-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능을 보유한 자가 제조·가공·조리하는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하는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을 받고 해양수산부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조사서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식품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및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별표 1 개정)

- 1)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과 해당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

4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19.

○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내용을 국내법령에 수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안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 1) 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령에 수용할 필요가 있음
- 2) 경유, 벙커 에이유(A 중유), 벙커 비유(B 중유) 및 벙커 시유(C 중유)의 황 함유량이 각각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및 3.5퍼센트이던 것을 0.5퍼센트로 강화하고(제42조제1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황 함유량 기준을 1.0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강화함(제42조제2항)
- 3)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박운항 중에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4.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19.

○ '18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심사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23조)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규제대상으로 확정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제120조의3제1항)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제123조)을 삭제함.

45.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19.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 18.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4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19
- 현행 지표조사의 의무적 실시기준은 사업면적 3만㎡이상으로 실시기준 미만이거나 사업면적을 기준 이하로 나누어 지표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또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관련된 신고절차를 상세히 정하며,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관리 제도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3만㎡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규정 개선
 - 나. 발견신고된 문화재 보상금 지급절차 현행화 등
 - 다. 조사기관 처벌조항 합리화

4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19
- 현행 지표조사의 의무적 실시기준은 사업면적 3만㎡이상으로 실시기준 미만이거나 사업면적을 기준 이하로 나누어 지표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또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관련된 신고절차를 상세히 정하며,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관리 제도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발견신고된 문화재 관련 서식 정비 등
- 나. 조사기관 관련 신고 및 서식 정비
- 다. 매장문화재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 개선
- 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기준 완화 등

4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20.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개정(법률 제15739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으로 특별대책지역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특별지역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안 제37조)
 - 특별대책지역 지정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던 의견청취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시행하도록 함
- 나.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공고방법 변경 (안 제39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다. 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용어 변경(안 제38조 및 제40조)

4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20.

○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였으나 협의를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을 받도록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 15739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됨에 따라,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신청 및 조정 결정 절차 구체화 (안 제14조의2 신설)

- 1)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였으나 협의를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조정신청 절차 등 마련 필요
-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함

나.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 변경(안 제12조제1항)

- 1)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지정요건 변경 필요
- 2) 특별대책지역 지정요건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시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

50.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1. 9. • 마감일자 : 2018. 12. 19.
- 2018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등 3개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